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03.30.

개정 2014.06.25.

개정 2016.11.29.

개정 2018.10.30.

개정 2019.06.24.

개정 2025.07.21.

삭제 <2025. 7.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인사규정 제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9. 6. 24., 2025. 7. 21.>
[제목개정 2025. 7. 2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21.>
②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6. 24., 2025. 7. 21.>
③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며, 주무관청 부서장(과장급)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9. 7. 21.>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중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9.> <개정 2019. 6. 24., 2025. 7. 21.>
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4.>
⑥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21.>
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1.>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21.>
② 위원장이 결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또한 결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21.>

제4조(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회장이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5. 7. 21.>
6. 삭제 <2018. 10. 30.>

제5조(회의소집 및 결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21.>

③ 삭제 <2025. 7. 21.>

④ 삭제 <2025. 7. 21.>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1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1.>

제6조(의안설명)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2025. 7. 21.>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의 기록은 간사가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전문개정 2025. 7. 21.]

제8조(심의내용의 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직권면직과 관련된 심의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상급자였던 경우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1.]

제11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7. 2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이 비상근 임원 및 외부위원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1.]

부 칙 〈201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신설 2014. 6. 25.〉〈개정 2016. 11. 29.〉, 처무규정으로 이동 〈개정 2018. 10. 30.〉

[별표2]〈신설 2014. 6. 25.〉〈개정 2016. 11. 29.〉, 처무규정으로 이동 〈개정 2018. 10. 30.〉

[별표3]〈신설 2014. 6. 25.〉, 처무규정으로 이동 〈개정 2018. 10. 30.〉

부 칙 〈2019.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7. 2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 (서명)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인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상기 본인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명 : ○○○ (서명)